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90
----------	-----

2024. 9. 6.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8. 23. 박다미 의원 대표발의(12명 공동발의)

나. 상정의결

-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2024. 9. 6.)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박다미 의원)

- 흡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 중 주민 이용이 많은 공영주차장과 하천 산책로를 금연구역으로 추가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흡연”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
- 나. 금연구역 추가 지정: 공영주차장, 하천 산책길 및 자전거도로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다. 합 의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주현)

가. 개정 취지 및 배경

- 흡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 중 주민 이용이 많은 공영주차장과 하천 산책로를 금연구역으로 추가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박다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 개정조례안임.
-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003년 채택한 「담배의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에 2005년 해당 협약에 가입하고, 2010년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 지정 금연구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이전부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던 ‘금연권장구역’은 법적 근거가 없어 권장 수준에 불과하였으므로, 상위법령과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의 ‘금연구역’ 지정 권한을 명시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정비한 것임.

나. 검토 내용

- **안 제2조(정의)**는 “흡연”이라는 현행 조례에 정의된 용어의 개념을 확대하려는 것임.
- “흡연”이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¹⁾를 피우는 행위이며, 담배에는

1) 「담배사업법」 [시행 2020. 7. 1.] [법률 제17142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궐련·파이프담배·물담배·전자담배가 모두 포함²⁾됨.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직접흡연(1차 흡연)’과 ‘간접흡연(2차 흡연 및 3차 흡연 포함)’을 포함하는 “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할 의무를 지고 있음³⁾.
- 담배로 발생하는 연기는 흡연자가 들이마시고 내뿜는 담배연기(주류연)와 타고 있는 담배 끝에서 나오는 담배연기(부류연)로 구분되는데, 담배를 흡입하지 않고 단순히 태워서 연기를 발생시키는 것만으로도 연기를 들이마시는 강제적인 흡연(2차 흡연)과 공기 중에 방출된 후 미세먼지 등에 섞여 장기간 떠돌아다니는 몇 가지 종류의 발암물질과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흡연(3차 흡연)이 일어나므로, 담배로 유해물질이 발생하기만 하면 곧 “흡연”으로 볼 수 있음⁴⁾.

< “흡연” 개념 정의 >

직접흡연	간접흡연	
1차 흡연	2차 흡연	3차 흡연
흡연자가 들이마시고 내뿜는 담배연기 발생	담배가 타면서 나오는 담배연기 발생	담배를 태우면서 나온 유해물질 등이 미세먼지 등과 결합하여 부유하는 부산물 발생

※ 국립암센터·보건복지부, 2017.10., <금연 길라잡이> 참조.

- 현행 조례 제2조 정의 규정은 “흡연”의 개념 정의가 1차 흡연으로 국한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2차 및 3차 흡연까지 포함하는 본래의 “흡연” 개념에 따른 법률 용어 정의 및 상식에 부합하는 표현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함.
- 다만, 안 제2조 정의 규정의 “흡연” 개념은 ‘불을 붙이는 형태’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의 간접흡연만 포함하여 한계가 있음. 상위법령에 정의된 담배의 종류 및 구분을 살펴보면 ‘담배’에는 불을 붙여서 연기를 발생시키는 방식의 기존 제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55호] 제27조의2(담배의 구분),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83호] 제60조(담배의 구분)

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4. 8. 17.] [법률 제19645호]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도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4) 국립암센터·보건복지부, 2017.10., <금연 길라잡이>, ‘3차 간접흡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품은 물론이고, 증기 형태로 니코틴을 흡입하는 유형, 씹거나 머금거나 코로 들이키는 유형의 신종 전자담배도 포함됨⁵⁾. 즉, ‘불을 붙이는 형태’는 아니지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에 규정된 ‘담배’에 해당하는 종류의 일부 제품이 있음.

- i) 용어 정의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바꾸어야 개념이 명확해진다는 점, ii) 보건복지부가 단속 대상은 특정한 담배 제품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이라고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기재한 점⁶⁾, iii) 강남구가 매년 보건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통계 조사>에서도 담배의 종류에 상관없이 흡연률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유념하여,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정의 규정 비교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u>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u>담배(전자담배를 포함한다)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u>담배를 태우거나 전자담배 전원을 켜는 등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을 일으키도록 담배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u>

※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담배제품 종류에 상관없이 금연의무 위반에 해당함.

○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은 조례 지정 금연구역의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

-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의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 제8조에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것이 사망·질병·장애를 초래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명백하게 정립되었다’는 것을 명시하고⁷⁾, 해당 협약 제8조를 이행하기

5) 질병관리청, 2022.5., <WHO 담배 관련 최신 자료>, 신규 및 신흥 니코틴 및 담배제품.

6) 보건복지부, 2024.12., <2024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p.82.

7) 「담배의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발효일 2005. 2. 27.] [다자조약, 제1743호]

위한 지침⁸⁾에 담배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담배 연기 노출로부터 보호가 가능해지므로 금연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함.

- 해당 협약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는 금연정책을 이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⁹⁾에 근거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강남구는 사무용 대형 건축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고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민원도 빈번하여, 2024년 8월 기준 서울시 자치구 중 금연구역 수 1위(총 30,162개소)인 곳임.

[붙임 2] 강남구 금연구역(시설) 현황

- **법정 금연시설의 수는** 음식점(17,121개소), 사무용·복합건축물(3,134개소), 학원(2,169개소), 의료기관·보건소(2,909개소), 체육시설(1,479개소) 순으로 많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정 금연시설 1~5위 >

(2024.8.31.기준)

음식점	사무용·복합 건축물	학원	의료기관 ·보건소	체육시설
17,121	3,134	2,169	2,909	1,475

- **조례 지정 금연구역은** 주로 버스정류장(580개소), 지하철 출입구 주변 구역(196개소), 도시공원(159개소), 학교보호구역(81개소) 등 실외 장소임. 서울시 25개 자치구들이 공통적으로 조례 지정 금연구역으로 정한 곳은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초·중·고등학교 인근 50m 이내), △도시공원, △가로변 버스정류소(인근 10m 이내)이며, 주요 지정 목적은 성장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 그 외에는 금연구역을 자치구별로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음.

8) 「담배의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 제8조 이행을 위한 지침(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Article 8)」, [발령 2017. 1. 1.]

9)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4. 8. 17.]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지정 금연구역 1~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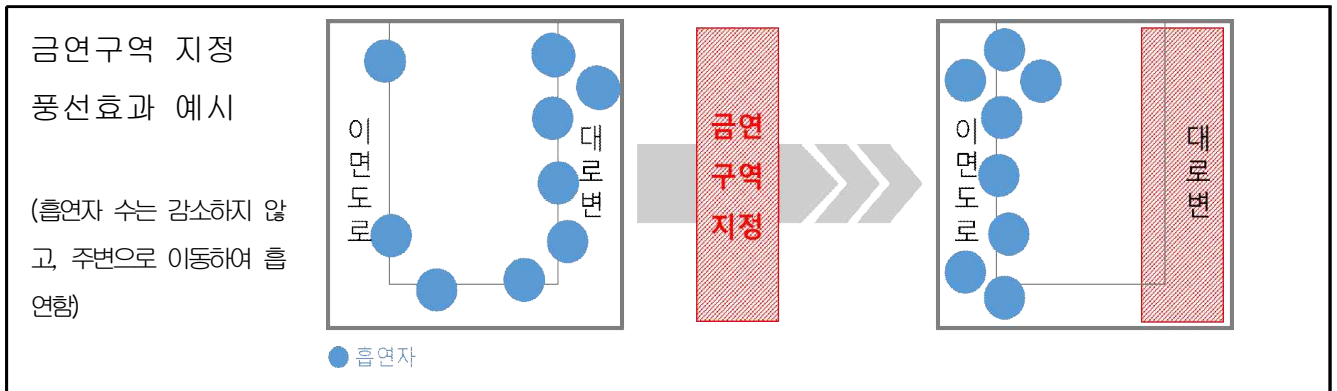
(2024.8.31.기준)

음식점	사무용·복합 건축물	학원	의료기관 ·보건소	체육시설
17,121	3,134	2,169	2,909	1,475

- 세계적인 흡연 규제 추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의무가 있고, 동시에 지역주민들 간의 이해와 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균형과 포용 정신을 발휘하여 정책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개선해야 함. 그리고 담배의 유해성과 니코틴 중독성, 그리고 담배산업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정보 왜곡, 전문정보에 대한 접근성 한계 등으로 강남구에 있는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모두 괴로움에 시달린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정책적 해결책을 찾아야 함.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강구하고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도록 한 책무를 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강남구는 이 조례안과 연관된 조례 지정 금연구역에 대해서 혐연권과 흡연권 간의 대립 문제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생각해보아야 할 의무가 있음.

< 조례 지정 금연구역 확대 관련 찬반 요점 >

	금연구역 지정 찬성	금연구역 지정 반대
효과	• 흡연자 수 감소 효과 있음 (국민건강수준 제고 기여도 높음)	• 흡연자 수 감소 효과 없음 (지정 실효성 없음)
관리	•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 가능	•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한 풍선효과 ¹⁰⁾ 발생
민원	• 간접흡연 피해호소 민원 해결	• 주변 상권으로부터 역(逆)민원 발생 (유동인구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영업피해 주장)
형평	• 흡연 규제는 세계적인 추세 ¹¹⁾ 임. (광범위한 지역의 흡연제한법 제정 등)	• 추가 지정 요구 빈도 증가 가능성 (미지정 지역에서 형평성 문제 제기)
과제	• 단속에 필요한 인력 부족 (신원 특정 가능한 현장 단속만 가능)	• 흡연 방지로 인한 부수적 문제 발생 (쓰레기 투기, 공기오염도 증가 등)
기타	• 다른 사업과 집행 우선순위를 다룰 가능성이 있음	• 소모적 자원 투입(인력, 시간)에 비해 단속 강화로 인한 과태료 징수 수입은 미미한 편임



- 협연권(공익, 국민의 건강)이 흡연권(사익, 개인의 권리)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인정한 헌법재판소조차 국가는 합리적 근거에 따라 흡연권을 제한하여야 하고, 동시에 전반적인 공공복리에 대하여 입법목적이 달성되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모색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기 때문임¹²⁾. 「국민건강증진

10) 기획재정부, 2022. 6., <경제용어 해설>

*풍선 효과(Balloon effect): 미국 정부가 불법 마약 생산 및 유통을 근절하려는 목적으로 단속을 강화한 후 마약 제조 및 밀매, 자금세탁 거점이 상대적으로 단속이 약한 지역으로 옮겨다니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적용하였으나 다른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모양이 마치 풍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볼록 튀어나오는 것과 같다 하여 생겨난 표현임.

11) 「담배의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발효일 2005. 2. 27.] [다자조약, 제1743호]

12) 헌법재판소, 2004. 8. 26., [전원재판부 2003헌마457]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법」에서도 강제성 규정은 아니지만 제9조제4항에 금연구역 지정시 흡연실 설치 가능성을 명문화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흡연실 설치 기준을 둔 것은 국민에 대한 포용성과 책임감을 전제로 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입법권의 전제 사항이며, 현행 조례 제4조(구청장의 책무)에도 내재되어 있는 책무임.
- 그렇다면 강남구는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 그 지정 조치의 효과성, 적절성, 파급 효과, 부작용, 대안의 유무 등을 폭넓게 확인하여야 함. 이미 정하여진 조례 지정 금연구역 중 서울시 25개 자치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정 한 곳(현행 조례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소), 화재발생시 피해규모를 고려하여 전문지식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곳(현행 조례 제5조제4호의 장소),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문제가 가시적으로 부각되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현행 조례 제5조제5호의 장소)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당위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조례안에서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정하려는 제5조제 6호부터 제7호까지의 장소에 대해서는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지정 금연구역 현황 및 대상 지역 목록 >
(조례안에 따라 제안된 대상 지역 포함 비교)

조례 지정 금연구역	상세 내역
1. 도시공원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통 지정
2. 학교정화구역	
3.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차대	
4. 금연특화거리 ¹³⁾	강남구 지정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하천 연변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례안 <신설> 대상
7. 강남구 관내 공영주차장	조례안 <신설> 대상
8.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현행 제6호와 같음)

13) 금연특화거리 9개소. [붙임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구역(시설) 현황 참조.

- 이 조례안 제5조제7호의 “강남구 관내 공영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24년 8월 기준 강남구의 공영주차장 수는 총 55개소(노상주차장 24개소, 노외주차장 30개소, 민간위탁주차장 1개소)가 있고¹⁴⁾, 거주자우선주차장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보임.

[붙임 3] 강남구 공영주차장 현황

- 부설주차장의 경우 건축물의 일부인 부속시설이면 법정 금연구역에 해당하지만 단독시설인 공영주차장은 금연구역이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이 점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법정 금연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공영주차장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¹⁵⁾하고 있음.
- 강남구의 경우 주거 및 상업지역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록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주거 및 상업지역의 시설을 이용하는 유동인구의 건강권을 고려한다면 일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 다만,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임. 노상주차장에서 흡연행위를 하던 흡연자가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근처 이면도로, 주택가 등으로 분산되면 본래의 시행목적 달성이 못한 채 민원건수만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 정책에 대하여 대상집단이 불응하는 경우를 고려하여야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보임.
- 도심지역은 건물 밀집도가 높고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흡연부스 등 흡연시설의 설치가 대안일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i)이미 2022년 11월 개당 약 7,500만원의 최첨단 스마트 흡연부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설치한

14) [붙임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주차장 현황 참조.

15) 보건복지부, 2024.12., <2024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p.69.

성동구에서 공기정화시설 필터 등 유지 및 관리 비용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 ii)강남구의 도시경관 및 지역 상황에도 부합하는 대안인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이 조례안 제5조제6호의 “「하천법」에 따른 하천 연변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는 강남구의 경우 탄천 강남구 구간(8.65km)과 양재천 강남구 구간(3.75km)에 조성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가 포함될 수 있을 것임. 2002년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탄천 구간과 2015년 서울특별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양재천 강남구 구간은 모두 상대적으로 탁 트여있는 자연을 누리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임.

[붙임 4] 강남구 양재천 및 탄천 현황도

- 도심에 건전한 여가와 휴식을 위한 녹지 공간을 늘 필요성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되며 그 특성상 사무공간 및 주거공간 등 인구밀집지역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에 마련되는 도시공원¹⁶⁾에 비하여, 하천의 경우 「하천법」에 따르기 때문에 규모 및 주변 환경과의 관계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하천법」에 따른 녹지인 한강공원의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지정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의 경우 앞서 2015년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 하였으나 흡연자들의 반발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부작용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되었다가, 여론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한강공원 금연-흡연 찬반 논의에 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를 반영한 <서울시 실외 금연구역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흡연구역 설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전체 구역의 금연을 전제로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흡연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적용하여 2022년 한강공원 흡연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해당 가이드라인 제6조에 따르면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흡연 행위에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공원 목록은 <서울의 공원> 강남구 공원 소개 참조.

대한 사회적 비규범화¹⁷⁾ 및 이후 금연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재규범화¹⁸⁾의 일부로써, 담배규제정책의 진화에 따라 완전 금연사회로의 이행 전까지 적용하는 조치라고 하였음.

- 강남구도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부응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인구밀도, 흡연 인구, 도시미관, 풍선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그러나 조례안 제5호제6호의 경우 위와 관련한 실제적인 면을 고려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크다고 판단됨. 현행 조례에 명시된 다른 장소와 달리 하천 녹지의 경우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할 전제 사항¹⁹⁾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①위 가이드라인에 명시된대로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검토를 통한 의견을 받았는지 여부가 드러나지 않으며, ②그에 준하는 강남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또는 그 밖의 전문가위원회의 의견을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고, ③집행부의 흡연구역 모니터링 현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음.
- 위 ①, ②, ③ 항목의 경우 소관부처, 기관 간 협력체계 등을 통하여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조례입법권으로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큰 규제인만큼 반드시 사전조사를 했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됨.

[붙임 5] 강남구 흡연다발지역 현황

- 위와 관련한 사항들을 점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서울특별시가 제공한 [붙임 5]의 자료를 살펴보면, 강남구의 흡연 민원 다발지는 주로 지하철역, 사무용 건축물 근처이고 하천 산책로 주변은 확신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보이므로, 강남구 관할지역에 있는 하천 연변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장기적인 실태조사 등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서울특별시에서도 하천 녹지의 경우 이와 같은 사전조사의 중요성을 체감하

17) 흡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우리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동으로 바뀌어나가는 것.

18) 이러한 사회적인 인식을 바뀌이는 과정.

19) 서울특별시, 2017. 1., <서울시 실외 금연구역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흡연구역 설치 가이드라인>

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 제11조(정보의 체계적 수집 및 공개) 규정을 포함시켰음.

다. 종합 의견

- 조례 지정 금연구역의 확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의 영역이며, 그 규제에 의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사안임.
- 앞서 살펴본대로 협연권과 흡연권 간의 대립 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하고, 지정 조치의 효과성·적절성·파급 효과·부작용·대안의 유무 등을 폭넓게 확인하고, 인구밀도·흡연인구·도시미관·풍선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온 정책이어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한다면 조례 지정 금연구역의 확대는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조치일 수 있겠으나,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는 인력과 자원을 어디까지 투입하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 없는 조치가 될 수도 있음. 국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궁극적 목표인 흡연문제의 해결(흡연자 수 감소 포함)을 달성하려면 지역적 특성을 포함한 여러 요소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도출된 정책이라야 하고, 명확한 근거 자료 없는 조치는 분쟁만 불러일으킬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 추가적으로 더 살펴볼 의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금연단속원에 관한 것임. 조례안으로 해당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더라도, 현장 적발만 유효한 금연단속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장소들을 다니면서 현장 단속을 이행할 단속원이 부족한 경우 지정의 실효성은 갖춰지지 못한다고 볼 수 밖에 없음.
- 2024년 8월 소관부서인 강남구 보건행정과 의견에 따르면 다른 자치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많은 금연구역 수에 비하여 단속원 수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으로 파악됨. 이 조례안과 관계없이 강남구 금연단속원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며, 추가 채용이 필수적이라고 보임.

[붙임 6] 강남구 금연단속원 현황

- 금연환경 조성 및 흡연 규제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인만큼 장기적·종합적 정책연구가 반드시 필요함. 조례 지정 금연구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의존하고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이지만, 자치입법권이 가지는 무게를 중히 여기고 협력체계 속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한다면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보답받을 수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임.

※ 관계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4. 8. 17.] [법률 제19645호]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55호]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법 제34조제3항제2호(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서울시 실외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 설치 가이드라인 [배포 2017. 1.]

제2조(설치 위치) ④ 자치구는 서울시 및 서울시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검토를 통한 의견을 참고하여, 흡연구역의 최종 위치를 선정한다.

※ 참고 자료

[붙임 1] 각 지방자치단체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2024. 8. 기준)

□ 조례 지정 금연구역의 경우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공통으로 지정한 장소(교육환경보호구역,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외에는 각기 달리 정하고 있음.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명 (제명 각기 다름)	교육환경 보호구역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	○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	○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붙임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구역(시설) 현황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행정과, 2024.8.31.기준)

□ 강남구 금연구역(시설)은 2024년 8월 기준으로 총 30,162개소임.

(단위: 개소)

기초자치단체	총 금연구역 수(A+B)	법정 금연시설(A)	조례 지정 금연시설(B)
강남구	30,162	29,063	1,099

(1) 강남구 법정 금연시설 2,9063개소

- 음식점(17,121개소), 사무용·복합건축물(3,134개소), 학원(2,169개소), 의료기관·보건소(2,909개소), 체육시설(1,479개소) 등

(단위: 개소)

청사	유치원 초중고대	의료기관 보건소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학원	교통관련 시설	어린이 운송 승합차	사무용· 복합 건축물
48	119	2,909	178	3	27	652	2,169	30	316	3,134
공연 장	대규모점 포 지하상가	관광 숙박업소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 10m	사회복지 시설	게임업소	목욕장	음식점	체육시설	만화 대여소	공동주택 (아파트 등)
29	32	60	215	323	99	71	17,121	1,475	10	44

(2) 강남구 조례 지정 금연구역 1,099개소

- 버스정류장(580개소), 지하철 출입구 주변 구역(196개소), 도시공원(159개소), 학교보호구역(81개소) 등

(단위: 개소)

도시 공원	학교 보호구역 (학교출입문 50m이내)	버스 정류소	구청사 광 장	지하철 출입구 10m	주유소 가스충전소	마을 마당	택 시 승차대	금연거리
159	81	580	1	196	37	10	26	9

(2-A) 금연거리 9개소 목록

<p>① 강남대로 일부 금연거리 총 1,567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남대로 동측 : 신논현역 5번 출구 ~ 강남역 12번 출구사이 보도 870m(2012년) 강남대로 남측 : 697m(연장)(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남역 1번 출구(미진플라자) ~ 캠프리지 빌딩(테헤란로 110), 142m 강남역 1번 출구 ~ 우성아파트 사거리(강남대로 338), 555m
<p>② 영동대로 코엑스 주변 836m(2012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엑스 사거리 ~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 입구사이 보도 836m
<p>③ 대치동 학원가(은마아파트 입구 사거리)주변 3,300m(2013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곡동길 : “롯데백화점 ~ 대치래미안 하이스턴 아파트 사거리 사이 양측보도” 삼성로 : “대치사거리 ~ 한티근린공원 사이 양측보도”
<p>④ 남부순환로 남측 615m(2017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봉터널 사거리 ~ 도곡역 4번출구 사이 보도 510m 군인공제회관과 타워팰리스 2차 사잇길 양측 보도 및 차도 105m
<p>⑤ 서울논현초등학교 주변 보도 116m(2017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남대로 122길(30m), 강남대로 120길(46m), 봉은사로 7길(40m)
<p>⑥ 도곡중학교 주변 양측 보도 및 차도 308m(2019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주로57길 253m, 도곡로38길 55m 강남세브란스병원 후문 입구 전체
<p>⑦ 휘문고등학교 주변 보도 및 차도 390m(2022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삼로 87길 보도 및 차도 70m, 역삼로 보도 및 차도 150m 역삼로 97길 보도 및 차도 60m, 테헤란로 92길 보도 및 차도 110m
<p>⑧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인접 보도 및 차도 305m(2023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곡로 70길 보도 및 차도 260m 도곡로 64길 보도 및 차도 45m
<p>⑨ 삼릉초등학교 인접 보도 및 차도 73m(2023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봉은사로63길 보도 및 차도 44m 선릉로112길 보도 및 차도 29m

[붙임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주차장 현황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행정과, 2024.8.31.기준)

노상·노외·민간위탁주차장 현황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집계되지 않음)

계 (A+B+C)	노상(A)	노외(B)						민간 위탁 (C)
		소계	학교 복합화	문화 센터	건물식	지평식	기계식	
55개소 (5,138면)	24개소 (1,013면)	30개소 (4,072면)	8개소 (1,463면)	4개소 (383면)	7개소 (885면)	10개소 (1,275면)	1개소 (66면)	1개소 (53면)

공영노상주차장 현황 : 24개소 1,013면

(2024. 8. 기준)

연번	주차장명	위치	급지	주차면	운영시간		최초 운영일
					평일	토·일·공휴일	
1	논현로131길 (학동역 7번출구 뒷길)	학동로 171 주변 (논현동 58)	1	21	09:00~19:00	무료	99.09.01.
2	언주로147길 (언북중학교 뒷길)	언주로147길 18 주변 (논현동63-16)	1	13	09:00~19:00	무료	99.10.04.
3	테헤란로69길 (선정릉 입구 앞길)	테헤란로63길 주변 (삼성동 142)	1	22	09:00~19:00	무료	99.12.17.
4	도산대로45길 (도산공원 앞길)	도산대로 323 주변 (신사동 651)	1	32	10:00~20:00	무료	99.12.21.
5	언주로171길 (신구중학교 뒷길)	언주로 857 주변 (신사동 621)	1	30	09:00~19:00	무료	99.12.28.
6	선릉로146길 (청담현대2차아파트 뒷길)	선릉로 742 주변 (청담동 23-3)	1	30	10:00~20:00 (야간-거주자)	무료	00.01.01.
7	테헤란로64길 (선릉역 1번출구 옆길)	테헤란로 412 주변 (대치동 890)	1	8	09:00~19:00	무료	00.01.06.
8	선릉로132길 (청담 삼성3차아파트 뒷길)	학동로 405 주변 (청담동 42)	1	17	09:00~19:00	무료	00.03.01.
9	영동대로85길 (대명중학교 뒷길)	테헤란로 504 주변 (대치동 942)	1	79	09:00~19:00	무료	00.07.01.
10	테헤란로26길 (역삼역 2번출구 아랫길)	테헤란로 152 주변 (역삼동 737)	1	10	09:00~19:00	무료	09.03.16.
11	영동대로86길 (삼성역2번출구 아랫길)	영동대로 430 주변 (대치동 995-10)	1	16	09:00~19:00	무료	20.01.01.
12	테헤란로78길 (포스코센터 옆길)	테헤란로 440 주변 (대치동 892)	1	10	09:00~19:00	무료	20.01.01.
13	한티역	선릉로 69 주변	1	34	09:00~19:00	무료	23.09.01
14	신사역	가로수길	1	33	11:00~21:00	무료	23.09.01
15	영동대로96길 (현대GBC 앞길)	테헤란로103길 10 주변 (삼성동 169)	2	13	09:00~19:00	무료	99.11.26.
16	남부순환로397길 (대치1동 주민센터 옆길)	남부순환로 2921 주변 (대치동 623)	2	31	09:00~19:00	무료	99.12.03.
17	영동대로106길 (현대GBC 뒷길)	영동대로106길 33 주변 (삼성동 162-23)	2	21	09:00~19:00	무료	00.01.06.
18	논현로28길 (독골근린공원 건너길)	논현로30길 주변 (도곡동 517)	2	66	09:00~19:00	무료	00.03.21.
19	대치동507-3 (구민회관 건너길)	삼성로 151 주변 (대치동 506)	2	27	09:00~19:00	무료	01.05.03.
20	현릉로745길 (자동차매매센터 주변길)	현릉로745길 37 단지내 (율현동 101-13)	2	215	09:00~19:00	무료	02.09.01.
21	은마아파트	삼성로 212 주변 (대치동 316)	2	57	09:00~19:00	무료	14.10.01.
22	압구정로29길 (압구정교회 옆길)	압구정로29길 51 주변 (압구정동 445)	3	137	09:00~19:00	무료	01.12.03.
23	대치유수지체육공원	역삼로107길 20-30 외 (대치동 78-24)	3	49	09:00~19:00	무료	08.07.23.
24	일원동 맛의거리	일원동 687~645-13	4	42	11:00~21:00	무료	14.02.03.

공영노외주차장 현황 : 30개소 4,072면

(2024. 8. 기준)

연번	주차장명	위치	급지	주차면	운영시간		최초 운영일
					평일	토·일·공휴일	
1	도곡로 327 (한티역 7번출구 앞)	도곡로 327 (역삼동 765-22)	1	19	24시간	24시간	02.08.01.
2	도곡로21길 7 (역삼중앙경로당 옆)	도곡로21길 7 (역삼동 795-38외2)	1	75	24시간	24시간	03.08.18.
3	도곡로 421 (한티역 2번출구 동측 250m 자점)	도곡로 421 (대치동 939-21)	1	25	24시간	24시간	04.10.11.
4	강남치매안심센터	선릉로108길 27	1	90	24시간	24시간	06.05.01.
5	역삼1문화센터	역삼로7길 16	1	118	24시간	24시간	07.08.16.
6	삼성1문화센터	봉은사로 616	1	66	24시간	24시간	09.10.12.
7	압구정428 (강남관광정보센터)	압구정로 161 (압구정동 428)	1	343	09:00~21:00	09:00~21:00	14.01.01.
8	논현제1호	학동로6길 19	1	88	24시간	24시간	23.02.01.
9	논현제2호	학동로20길 13	1	78	24시간	24시간	23.09.01.
10	논현로32길15 (한국과학기술원 도곡캠퍼스 인근)	논현로32길 15 (도곡동 516-2)	2	16	24시간	24시간	01.12.10.
11	대치2문화센터	영동대로65길 24	2	156	24시간	토,공휴일 24시간 일요일 00시~12시	06.08.01.
12	언북초교	삼성로135길 42	2	220	24시간	24시간	07.11.01.
13	논현초교	강남대로120길 33	2	186	24시간	24시간	11.07.25.
14	도곡초교	선릉로64길 33	2	195	24시간	24시간	14.01.01.
15	신구초교	압구정로18길 28	2	184	24시간	24시간	14.01.15.
16	역삼문화공원제1호	테헤란로7길21	2	247	24시간	24시간	22.12.19.
17	구룡산제1호	양재대로 478 외	3	91	09:00~19:00	무료	00.07.14.
18	구룡산제2호	양재대로 478	3	127	09:00~19:00	무료	02.11.01.
19	포이초교	개포로22길 87	3	189	24시간	24시간	05.10.27.
20	논현로22길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인근)	논현로22길 (개포동 1266)	3	86	24시간	24시간	05.12.05.
21	개포동공원	개포로 509	3	145	24시간	24시간	06.05.01.
22	언주초교	남부순환로363길 19	3	203	24시간	24시간	09.11.16.
23	개포4문화센터	개포로24길33	3	43	24시간	24시간	22.09.19.
24	탄천주차장	대치동78-25	4	137	24시간	24시간	00.09.06.
25	탄천제2호	양재대로55길 28	4	322	24시간	24시간	07.10.15.
26	대청역	개포로 623-1	4	162	24시간	24시간	09.10.19.
27	영희초교	일원로 21	4	185	24시간	24시간	10.01.06.
28	일원1동(기계식)	양재대로27길 5	4	66	24시간	24시간	12.03.01.
29	대왕초교	헌릉로618길 8	4	101	24시간	24시간	13.11.01.
30	밤고개로21길 (울현공원 인근)	밤고개로21길 (울현동 77-5외)	4	109	24시간	24시간	18.01.01.

민간위탁주차장 현황 : 1개소 53면

(2024. 8. 기준)

주차장명	위치	급지	주차면	운영시간		최초 운영일
				평일	토·일·공휴일	
개포주공5단지	개포동 187	2	53	09:00~19:00	09:00~15:00(토) 무료(일·공휴일)	98.07.07.

[붙임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 및 탄천 현황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원녹지과, 2024.8.31.기준)



[탄천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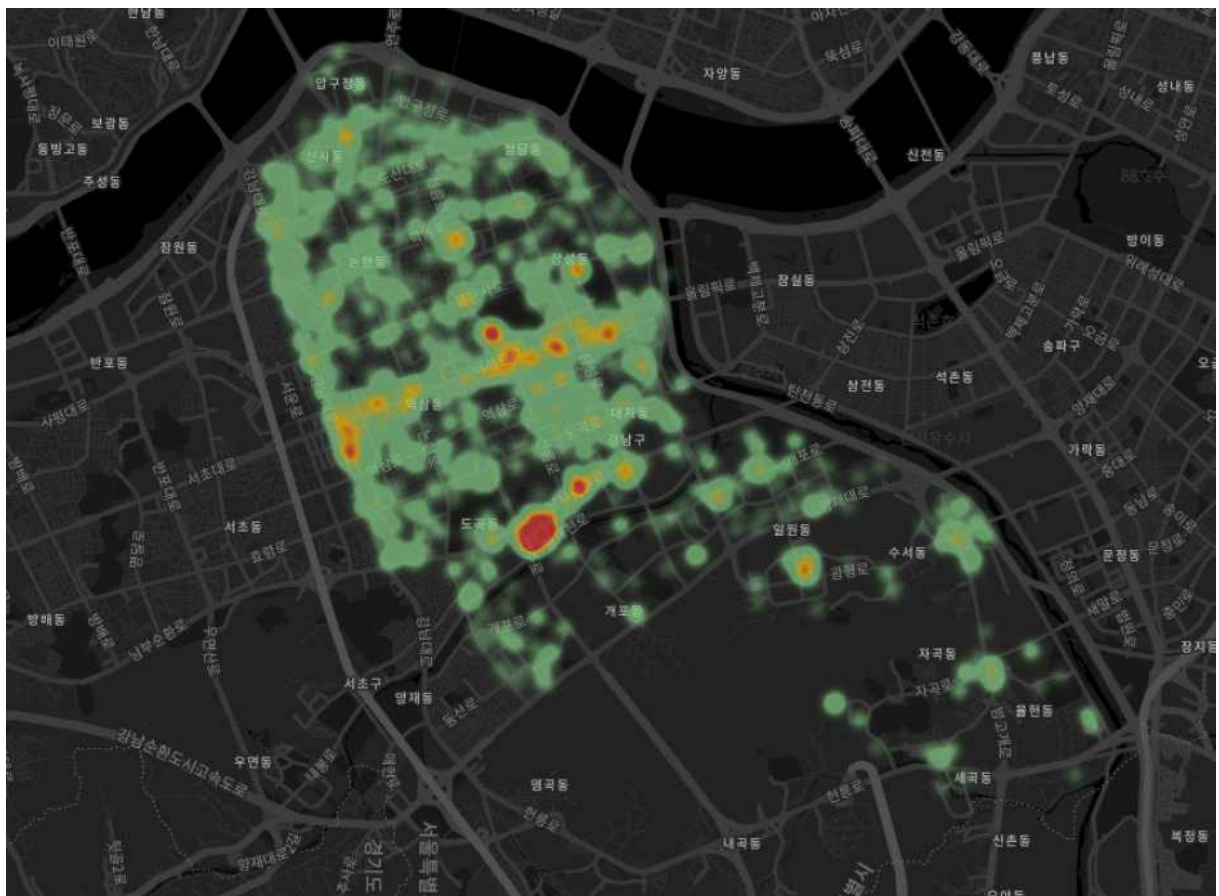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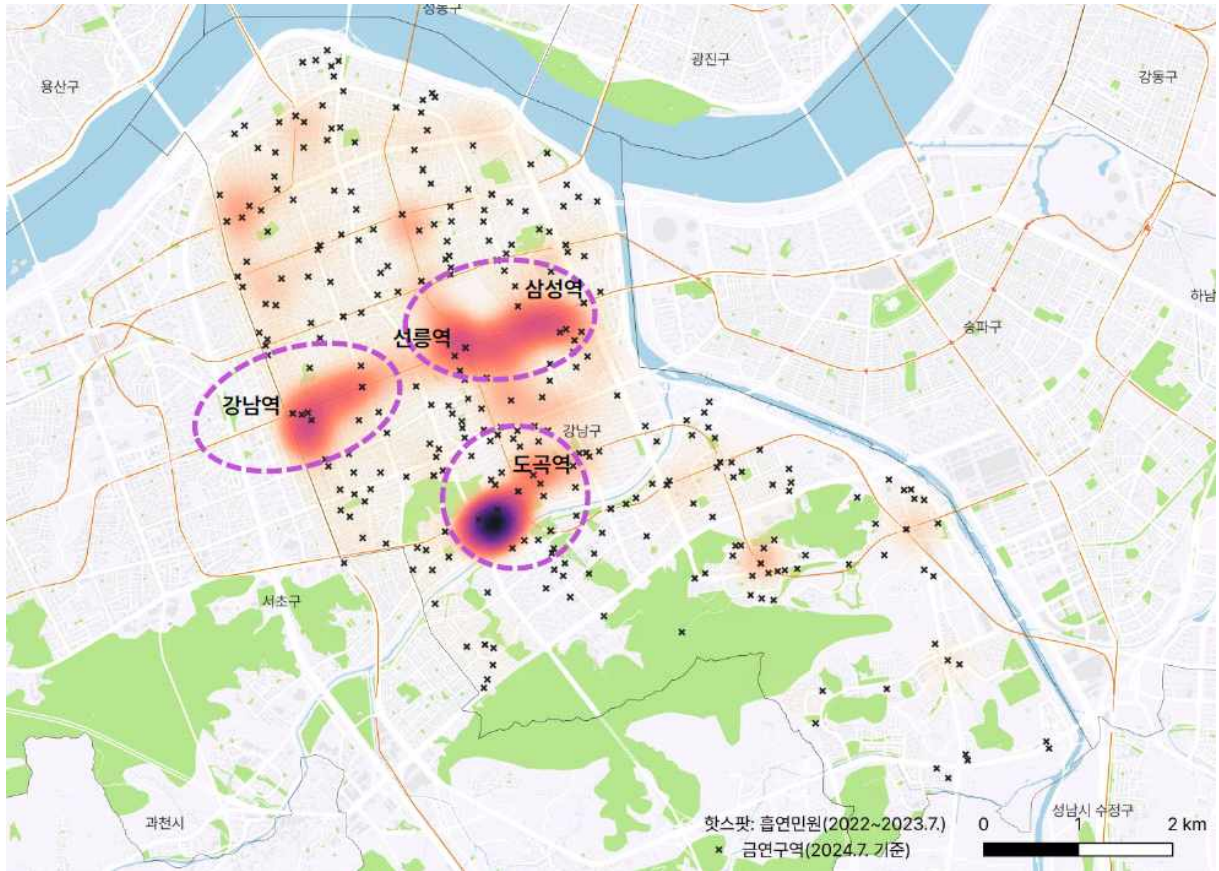


[양재천 현황도]



[붙임 5] 서울특별시 강남구 흡연다발지역현황

(서울특별시 데이터전략과, 2024.8.기준)



[붙임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단속원 현황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행정과, 2024.8.31.기준)

지방자치단체	금연구역(개소)	단속원(명)
강남구	30,162	6
서초구	17,178	15
송파구	18,027	8

○ 금연단속원 추가 채용 필요(2인 1개조로 활동)

- 인근구 대비 금연구역은 많으나 단속원 수가 부족
- 금연단속원(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총 6명으로 2인 1개조로 운영중이며, 월 평균 90건 단속 및 229건 민원처리

[부서 의견]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소관부서 의견 제출**

발 의 자 : 박다미 의원 대표발의 외 11인(의안번호 : 390)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부서의견

○ 금연단속원 추가 채용 필요(2인 1개조로 활동)

- 인근구 대비 금연구역은 많으나 단속원 수가 부족
- 금연단속원(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총 6명으로 2인 1개조로 운영중이며, 월 평균 90건 단속 및 229건 민원처리

	금연구역(개소)	단속원(명)
강남구	30,162	6
서초구	17,178	15
송파구	18,027	8

○ 금연구역 추가 지정 관련 2025년 예산 증액 편성

- 금연단속원 인력운영비, 금연표시재 추가 제작 등

○ 노상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시 예상되는 문제점

- 흡연자가 근처 이면도로, 주택가 등으로 이동하는 풍선희과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제기 가능성 있음

○ 공포와 동시에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 홍보 및 계도 부족으로 과태료 부과시 흡연자들의 민원제기 가능성 있음

적 성 지 보건행정과장 : 주영애 ☎7010 건강증진팀장 : 송정희 ☎7031 담당 : 고세정 ☎7032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2024. 9. 6.)

- 질 의 : 금번 개정안이 「하천법」에 따른 하천 연변의 보행자길과 관내 공영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타 구 상황은 어떠한가.
- 답 변 : 서울시 25개 구 중 영등포구가 관내 공영노외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중구, 광진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노원구 11개 구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 연변의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금번 개정안으로 관내 공영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공영주차장 상시 근무자를 금연단속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7. 토론 요지

- 정의 규정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범위를 조정하는 수정안이 제출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390호

발의일자 : 2024. 9. 6.

제안자 : 경제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 정의 규정을 법령에 부합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함
-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범위 중, 개정으로 인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삭제·조정하고자 수정함

2. 수정내용

- 정의를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1호)
- 금연구역 추가 지정 범위 중 일부를 삭제함(안 제5조제1항제6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태우거나 전자담배 전원을 켜는 등 직접흡연 또
는 간접흡연을 일으키도록 담배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
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p> <p>2. (생략)</p> <p>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신설></p>	<p>제2조(정의) ----- -----.</p> <p>1. “흡연”이란 담배(전자담배를 포함한다)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하천법」에 따른 하천 연변의 <u>보행자길</u></p>	<p>제2조(정의) ----- -----.</p> <p>1. “흡연”이란 담배를 태우거나 전자담배 전원을 켜는 등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을 일으키도록 담배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삭제></p>

<신 설>

6. (생 략)

② ~ ④ (생 략)

7. 강남구 관내 공영주차장

8.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6. 강남구 관내 공영주차장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피우는”을 “태우거나 전자담배 전원을 켜는 등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을 일으키도록 담배제품을 사용하는 모든”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6. 강남구 관내 공영주차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흡연”이란 담배를 <u>피우는 행위</u>를 말한다.</p> <p>2. (생략)</p> <p>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6.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u>태우거나 전자담배 전원을 켜는 등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을 일으키도록 담배제품을 사용하는 모든</u> ----.</p> <p>2. (현행과 같음)</p> <p>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강남구 관내 공영주차장</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다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0
----------	-----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 박다미·안지연·복진경·
오은누리·이호귀·
윤석민·이동호·손민기·
노애자·김진경·이성수·
김광심 의원(이상12인)

1. 제안이유

흡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 중 주민 이용이 많은 공영주차장과 하천 산책로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흡연”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

나. 금연구역 추가 지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흡연”이란 담배(전자담배를 포함한다)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하천법」에 따른 하천 연변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보행자길
7. 강남구 관내 공영주차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u></p> <p>2. (생략)</p> <p>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6.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u>“흡연”이란 담배(전자담배를 포함한다)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u></p> <p>2. (현행과 같음)</p> <p>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하천법」에 따른 하천 연변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보행자길</u></p> <p>7. <u>강남구 관내 공영주차장</u></p> <p>8.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